

1. 개정이유

- 가. 일반화재용자동확산소화기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, 용도에 맞는 자동확산소화기의 설치를 위해 설치장소를 포함한 용도별 정의 필요하다.
- 나. 연소기의 개수를 고려한 자동확산소화기의 설치 위치 및 개수에 대한 기준 마련을 통해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자동확산소화기의 용도별 정의 신설(안 1.7.1.3)
- 나. 부속용도별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개선(안 표 2.1.1.3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및 동법 시행규칙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101)

일부개정공고안

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101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.3 기준의 시행 "2022년 12월 1일"을 "2023년 8월 9일"로 하고, 1.5 경과조치 1.5.1의 "「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1)」에"를 "기준에"로 하며, 1.5.2의 "제정 기준이"를 "개정 기준이"로, 같은 호 중 "제정 기준에"를 "개정 기준에"로 한다.

1.7.1.3 자동확산소화기의 용도별 정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7.1.3 "자동확산소화기"란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다음 각 소화기를 말한다.

- (1) "일반화재용자동확산소화기"란 보일러실, 건조실, 세탁소, 대량화기 취급소 등에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기를 말한다.
- (2) "주방화재용자동확산소화기"란 음식점, 다중이용업소, 호텔, 기숙사, 의료시설, 업무시설, 공장 등의 주방에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기를 말한다.
- (3) "전기설비용자동확산소화기"란 변전실, 송전실, 변압기실, 배전반실, 제어반, 분전반등에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기를 말한다.

표 2.1.1.3 ‘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’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.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 m²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할 것.
이 경우 나목의 주방에 설치하는 소화기 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(K급)로 설치해야 한다.
2. 자동확산소화기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10 m² 이하는 1개, 10 m² 초과는 2개 이상을 설치하되, 보일러, 가스레인지 등 방호대상에 유효하게 분사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될 수 있는 수량으로 설치할 것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1.3.1 이 기준은 <u>2022년 12월 1일</u> 부터 시행한다.	----- <u>2023년 8월 9일</u> ----- -----.
1.5.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「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1)」에 따른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기준에</u> ----- ----- -----.
1.5.2 이 기준 시행 전에 1.5.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<u>제정 기준이</u>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<u>제정 기준에</u> 따를 수 있다.	----- ----- <u>개정 기준이</u> ----- ----- <u>개</u> <u>정 기준에</u> -----.
1.7.1.3 “자동확산소화기”란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를 말한다.	1.7.1.3 “자동확산소화기”란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다음 각 소화기를 말한다.
(1) <신 설>	<u>(1)“일반화재용자동확산소화기”</u>
(2) <신 설>	<u>란 보일러실, 건조실, 세탁소, 대</u>
(3) <신 설>	<u>량화기취급소 등에 설치되는 자</u>
	<u>동확산소화기를 말한다.</u>
	<u>(2)“주방화재용자동확산소화기”</u>
	<u>란 음식점, 다중이용업소, 호텔,</u>

표 2.1.1.3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

소화기구의 능력단위
1.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 m ²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, 그 외에 자동확산 소화기를 바닥면적 10 m ² 이하는 1개, 10 m ² 초과는 2개를 설치할 것
2. 나목의 주방의 경우, 1호에 의하여 설치하는 소화기 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(K급)를 설치할 것

기숙사, 의료시설, 업무시설, 공장 등의 주방에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기를 말한다.

(3)"전기설비용자동확산소화기"란 변전실, 송전실, 변압기실, 배전반실, 제어반, 분전반등에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기를 말한다.

표 2.1.1.3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

소화기구의 능력단위
1.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 m ²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할 것. 이 경우 나목의 주방에 설치하는 소화기 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(K급)로 설치해야 한다.
2. 자동확산소화기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10 m ² 이하는 1개, 10 m ² 초과는 2개 이상을 설치하되, 보일러, 가스레인지 등 방호대상에 유효하게 분사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될 수 있는 수량으로 설치할 것